



제 4 1 4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남해안권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지원법 제정〉
■ 서삼석·양향자·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268호)

2024. 5.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및 구성체계	4
가.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4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12
2. 조문별 검토	15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5
나.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안 제4조 및 제5조)	18
다.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21
라.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24
마. 관광개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통합개발계획 및 종합심의기관 등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31
바.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18조)	36
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이주대책, 준공인가,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9조부터 제24조 까지)	43

아.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48
자. 관광산업의 지원(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60
차. 재정지원 등(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64
카.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추진기구의 설치(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69
타. 특별회계 설치(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74
파.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등(안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78
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별법상 의무고용 등 규정 배제(안 제62조) ..	82
거. 벌칙·과태료(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8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삼석의원·양향자의원·최형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1. 12.
3. 회 부 일 : 2024.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대첩·노량해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배경이 되었고, 최근에는 바다와 역사·문화를 접목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처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해안권의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주요 개발축과 떨어져 있는 위치로 인하여 외부 및 지역 간 광역교통망 형성이 미흡하여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남해안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관광진흥 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각종 계획

·시책을 종합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계획과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재정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마.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해양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수상 레저산업,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의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국가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우선 지원, 보조율의 인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등 남해안권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업시행자 부담 감면을 할 수 있음(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48조).

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안 제49조).

자.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이 이를 관리·운영 하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차. 관광진흥지구 내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남해안권 투자 진흥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 및 고용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및 구성체계

가.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남해안권은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임.

2022년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 경험자 중 방문여행 지역이 경남 10.1%, 전남 9.1%, 부산 4.6%로 경남과 전남의 경우 경기(20.7%)와 강원(12.8%) 다음으로 여행자 수가 많은 지역이었고, 관광여행의 전반적 만족도는 전남 81.8점, 부산 81.5점으로 제주(84.0점) 다음으로 나타나 내국인 여행객이 선호하는 여행지임.¹⁾

또한, 조선, 원전, 물류 등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음.

그러나 남해안권의 경우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²⁾ 자연공원³⁾ 등으로의

1) 문화체육관광부, 2022 국민여행조사, p.9, p.155.

지정에 따른 지역개발 제한으로 관광기반시설 등의 조성이 어려웠고, 도서지역이 많은 특성상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하여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90일 이내로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 여행객의 지역별 방문율은 부산 20.3%였지만, 전남 2.0%, 경남 3.4%로서, 서울 82.4%, 경기 14.1%, 제주 11.4%에 비해 크게 떨어지

2)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수면 10개 중 9개(가막만, 진동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한산만, 남해·통영 I, 남해·통영 II, 여자만, 함평만)가 남해안권에 해당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79개 중 29개(36.7%)가 남해안권인 경남, 전남, 부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구역에서의 공원사업 외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 9. (생략)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는 것으로 나타났음.⁴⁾ 따라서, 남해안권은 내국인 여행객의 선호 관광지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기는 쉽지 않은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광자원을 관리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⁵⁾

제정안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적 방향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기구 설치, 개발제한 해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 p.39.

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남해안 관광의 미래를 묻고 답한다」(2023.7.4. 창원컨벤션센터), 「남해안권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2024.2.1.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첫째, 현행 법체계상 특정 지역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제정안의 입법목적 및 사업방식 등과 유사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 이미 시행(2008. 6. 28)되고 있어, 제정안의 입법 실익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안내륙발전법」은 2007년 동·서·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이후 2010년 개정시 내륙권까지 동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음.

동 법은 전체 권역을 포함하여 ‘남해안권’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정안과 지역적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동 법의 체계와 유사함. 즉 동 법의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등 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토지등의 수용·사용, 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및 재정 지원 등 관광개발을 포함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인바, 남해안권인 부산(10개 구·군), 경남(7개 시·군), 전남(16개

시·군)6)에 대하여 4대 추진전략, 7개 프로젝트(총 96개 세부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7)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해안권을 포함한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이나 추진할 예정인 사례가 있음. 기존 추진 사업으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00~’09),8)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10~’17)9)이 있었음. 신규사업으로는 2023년부터 10년간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5개 시·도의 40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조 64억원을 투입하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3~’33)을 추진 중임.

-
- 6) 부산광역시 10개 구·군: 중·서·동·남구, 영도·해운대·사하·강서·수영구, 기장군
전라남도 16개 시·군: 목포·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진도·신안군
경상남도 7개 시·군: 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군
- 7) 전략 1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46개 사업), 전략 2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25개 사업), 전략 3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17개 사업), 전략 4 동서간상생·협력벨트조성(8개 사업)
- 8) ※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개요
- 총사업비: 2조 58억원(국비 3,883, 지방비 4,501, 민자 11,674)
 - 사업범위: 3개 시·도, 29개 시·군·구
 - 사업내용: 부산권(동부산), 해양레저스포츠권(통영), 종합휴양권(여수·남해), 역사문화권(목포) 등 총 64개 사업
- 9) ※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개요
- 대상지역: 남해안 3개 시·도 27개 시·군·구
 - 부산(기장, 사하, 강서, 동구, 영도, 해운대)
 - 전남(광양, 여수, 목포,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진도, 영암, 신안)
 - 경남(김해, 창원,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 사업기간: 2010년 ~ 2017년(8년간)
 - 사 업 비: 3,904억원(국비 1,444 / 지방비 1,930 / 민자 530),
광특회계 광역계정(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사업내용: 이순신, 섬, 공룡, 습지, 크루즈 등 5대 테마 24개사업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이미 남해안권 관광개발이 국토교통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실익이 있는지, 특별법 제정 시 지원대상의 중복 여부와 기존 법률에 따른 계획 등과의 충돌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둘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 관련 지원법 제정은 별도 제정의 필요성·타당성·우선순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남해안권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가 53개소(부산 5개소, 전남 27개소, 경남 21개소), ‘관광단지’가 10개소(부산 1개소, 전남 6개소, 경남 3개소)임. 이는 전체 ‘관광지’ 244개소 중 23.7%, ‘관광단지’ 49개소 중 20.4%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특히, 남해안권 관광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은 다른 지역의 특별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해안내륙발전법」 제정('07) 당시에 도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3건의 법률안이 먼저 발의되었고,¹⁰⁾ 이후에 동해안권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발의되었으며,¹¹⁾ 심사과정에서는 서해안권까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동·서·남해안’을 모두 포괄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은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타 법률 인허가의제,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재정지원, 추진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안의 입법 및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소관하는 타 부처와의 충실한 협의가 중요할 것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10) 남해안균형발전법안(신중식의원 등 19인, 2006. 8. 30),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의원 등 28인, 2006. 9. 7),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주승용의원 등 23인, 2006. 9. 29)

11)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안(윤두환의원 등 15인, 2006. 12. 14)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¹²⁾ 세부 조항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외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도 타 부처 의견과 여타 권역 개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동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¹³⁾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¹⁴⁾ 남해안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2건의 제정안¹⁵⁾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2) 기획재정부: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등을 통해 각 지역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낮으며, 특정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각 지역별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우려됨.

해양수산부: 제정안에서 제시되는 각 사항에 대해 각 부처별로 문체부(관광), 국토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인프라 개발 등), 해수부(해양레저관광 무인도서 등), 행안부(유인도서 등) 등이 담당 업무를 추진 중으로, 별도의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신설할 경우 정부 업무체계상 중복이 발생하며 기존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혼선과 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별도 법률이나 조직 신설보다는 문체부, 국토부, 행안부, 해수부 등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정점식의원 등 11인, 2023. 6. 7, 의안번호 제2122512호)

14) 제정안은 기 발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계획 등의 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15)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등 10인, 2023. 5. 8, 의안번호 제2121828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김희재의원 등 12인, 2023. 6. 2, 의안번호 제2122462호)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7개 장, 69개 조문,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됨.

장 단위로 살펴보면 ① 제정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총칙 규정 ②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③ 「산지관리법」 등 타 법률 적용의 특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지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⑤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⑥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등, ⑦ 보칙 및 벌칙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제9조(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해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등) 제11조(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 제12조(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13조(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5조(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 제17조(종합심의의 절차 등)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구 분		주 요 내 용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이주대책) 제21조(준공인가 등)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 등) 제24조(지역기업의 우대)
제3장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등	제1절 특례	제25조(「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제26조(「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의 특례) 제27조(「자연공원법」 적용의 특례) 제2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29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0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매각 등의 특례) 제3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2조(폐교재산의 활용) 제33조(「국가재정법」 적용의 특례) 제34조(「출입국관리법」 적용의 특례) 제35조(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2절 관광 진흥 지원	제36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37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제38조(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 제39조(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및 생산 지원) 제40조(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의 우선 지원) 제41조(남해안권 섬 관광 활성화) 제42조(남해안 해양관광축제의 활성화) 제43조(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제3절 재정 지원 등	제44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45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46조(조세의 감면) 제47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4장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추진기구		제48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9조(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의 설치 등) 제50조(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업무) 제51조(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 제52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5장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		제53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의 설치) 제54조(차입금) 제55조(예비비) 제56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7조(잉여금의 처리)

구 분	주 요 내 용
제6장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58조(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 지정) 제59조(투자진흥구역의 지정 해제) 제60조(투자진흥구역의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61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6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7장 보칙	제63조(관광진흥지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64조(남해안권 관광 통계의 작성) 제65조(감독) 제66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67조(벌칙)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1년 후 시행 제2조(유효기간)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제3조(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유효기간 만료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조는 남해안권의 지리적·자연적·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남해안권’,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등의 정의, 안 제3조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해안권의 지리적·자연적·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안권”이란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중 남해안선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이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 및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광개발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합개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6.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이란 국내외 투자자 및 입주기업 유치를 위하여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남해안권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상 일반적인 국토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고, 관광 개발은 「관광진흥법」을 통해 전국의 관광자원에 대하여 광역권별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특별법¹⁶⁾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의 전반적인 개발을 위한 특별법으로는 「해안 내륙발전법」이 시행 중임.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제정안의 경우, ‘남해안권’이라는 특정 지역의 관광 개발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남해안권의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해안권’을 남해안선에 인접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의 일부 지역으로 정의하며,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안내륙발전법」의 제정 목적이 동·서·남해안권,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과 국제적 관광지역으로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으로, 제정안과 지역적 범위에서 ‘남해안권’ 외에 동·서해안권과 내륙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사업 범위에서 지역관광 개발 외에 지역전반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외 기본계획의 수립,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에 대한 정의 조항도 유사하므로,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제정안과 해안내륙발전법 간 비교(목적, 정의, 국가·지자체의 책무 등)

구분	제 정 안	해안내륙발전법(현행)
목적	남해안권을 국제적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동·서·남해안권,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정의 (대상지역)	남해안권: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중 남해안선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남해안권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정의 (기본계획)	남해안권관광진흥기본계획: 문체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진흥과 관련된 관계 부처 및 사·도의 계획·시책을 종합하여 5년마다 수립한 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국토부장관이 해안권별로 시·도지사가 공동 입안한 종합계획안에 대해 결정한 계획
정의 (관광 진흥 지구)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남해안관광청장이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 *남해안관광청: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해양관광진흥지구: 국토부장관이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고시한 개발구역 해안권 개발구역: 국토부장관이 해안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
정의 (개발계획)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남해안관광청장이 승인한 계획	해안권 개발구역 개발계획: 해안권 개발 구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계획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국가·지자체는 상호 협력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 등	국가는 종합 시책 수립·추진 및 지원 방안 강구, 지자체는 협력을 통해 계획·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안 제4조 및 제5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특례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 외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4조 및 제5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현재 국토개발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개발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각 국토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각 개별법 또는 특별법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이에 제정안은 그 시행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법 적용상 불명확성을 줄이고, 법률 간의 관계 명확화를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음.

개발계획이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중복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항을 통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이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등을 우선 적용하는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계 획(법 른)	주 요 내 용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 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부대장이 수립하는 소관 관할부대의 관리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문체부장관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 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한 계획

계 획(법 률)	주 요 내 용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시·도지사가 관광개발기본계획에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관광개발계획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해안내륙발전법)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계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각각의 입법취지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제정안과 이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타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은 시 또는 군 등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이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우선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획에 동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6조는 문체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관제

중앙행정기관, 시·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남해안권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남해안권의 글로벌 관광거점으로서의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정안 원문]

안 제6조

제6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해양·문화·휴양·스포츠 관광 등 남해안권의 새로운 관광분야 발굴 및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남해안권 소재 섬의 관광개발 등 특화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6. 남해안권의 소득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8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경상남도지사·부산광역시시장·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라 관광진흥기반 조성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해안권 등 지역에 대해서는 「해안내륙발전법」 제5조에 따라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은 현행법을 통해 수립되고 있는 각종 기본계획에서 포괄할 수 있으며, 문체부장관이 전국 단위가 아닌 특정 권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함.

[표] 관광진흥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발전종합계획 간 비교

제정안	현행 법률상 계획
1.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관광개발)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안내륙)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남해안권 해양·문화·휴양·스포츠 관광 등 새로운 관광 생태계 추진 및 관광 개발·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관광개발)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해안내륙)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제정안	현행 법률상 계획
4. 남해안권 섬 관광 등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개발)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해안내륙)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 유치·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개발)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해안내륙)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남해안권의 소득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해안내륙)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사항
7. 그 밖에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진흥)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개발)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안내륙)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 관광기본법 상 관광진흥기본계획(제3조),

‘관광개발’: 관광진흥법 상 관광개발기본계획(제49조),

‘해안내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상 발전종합계획(제5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7조는 남해안관광청장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관광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광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지정 해제, 행위 등의 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정의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7조(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제49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의 장(이하 “남해안관광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이하 “관광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지구의 지정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2.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의 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지정 요청 전에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요청받은 남해안관광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제48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다.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남해안관광청장은 제7조에 따라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9조(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해제)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사항으로 보아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관광진흥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남해안관광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등) ① 관광진흥지구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흙·돌·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흙·돌·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 등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관광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3. 관광개발사업 시행자 및 관광개발사업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6.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지구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8.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관광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 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 지역에서 관광진흥지구 지정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0.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근거 및 지정시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상 지정·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 등을 규정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관광진흥지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해안 내륙발전법」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유일한 바, 제정안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효과는 현행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유사하므로, 기존 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해안내륙발전법」상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

- (개발구역) 시·도지사 요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계획법), 국립공원위원회(자연공원법),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건축법) 심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지정(해안내륙발전법 제7조①)
 - * ①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②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일 것 ③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④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등
- (해양관광진흥지구) 해안내륙발전법 제7조①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절차 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연재해대책법),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연안관리법)를 거쳐야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의 포함사항, 관광진흥지구 지정시 의제되는 개별법상 개발계획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등에 대한 소관 부처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지정 관련 타 부처 의견

조항	부처	검토의견
안 제7조	해수부	「해안내륙발전법」의 해양관광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 제정안의 관광진흥지구와 유사하게 관광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므로 필요한 경우 현행 법률에 필요한 특례를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
안 제9조	해수부	관광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로 의제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도 함께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9조의 지정해제 의제에 제12조를 포함할 필요
안 제12조 (제1·2호)	국토부	남해안관광청장이 용도지역·구역계획 입안권자인 시·군을 배제한 채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용도지역·구역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공간계획 무력화, 환경·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삭제 필요
(제3호)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등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시·군이 통합·조정된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라 제정안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삭제 필요
(제6호)	해수부	제정안에 따라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 전에 계획 목적과 해당 해양공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맞게 용도 구역 등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 필요
(제8호)	환경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하천 치수방재 사업의 주요 사항이므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법령 및 수립기준 등에 맞추어 수립·변경 필요하므로 삭제 필요
(제9호)	환경부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및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 입법 목적과 자연공원 해제·축소 및 공원계획 변경 시 엄격한 요건과 절차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타 법상 지구 등과의 형평성 등 고려 시, 관광진흥지구 지정으로 공원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
(제10호)	해수부	항만은 「항만법」 등을 근거로 일관되게 개발·운영 중으로 타 법에서 별도의 계획, 승인 권한을 갖게될 경우, 업무 혼선, 중첩 등이 발생하여, 항만 개발·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가능하므로 삭제 필요
(제11호)	해수부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은 어항시설만 도입 가능하고 어항 고유의 기능을 벗어난 개발계획은 시설 도입 및 검토 불가, 제정안의 개발 계획으로는 어항개발계획의 적정성 검토할 수 없어 삭제 필요

마. 관광개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통합개발계획 및 종합심의
기관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광개발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신청 및
변경 절차,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개발계획·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의 수립·승인, 실시계획 또는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위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종합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 등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실시를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3조(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안관광청장이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6.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지구 개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남해안관광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관광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단계별 관광개발 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채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개발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2.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제48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남해안관광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남해안관광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계획에는 제11조 각 호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④ 남해안관광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합계획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제16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5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교통·재해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종합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관광진흥지구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 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종합심의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남해안관광청장은 종합심의의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종합심의의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교통·재해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남해안관광청장에게 종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심의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승인 관련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및 관계 기관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종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각 개별법상 별도 심의대상인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함.

통합개발계획(안 제15조)은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¹⁷⁾에서 통합개발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1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제22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산업혁신 거점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제23조제5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과 공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산업혁신구역계획, 실시계획 등을 동시에 수립하기 위하여 지정·결정·승인 또는 인가 전에 제51조에 따른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또한, 각 개별법상 별도 심의대상인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종합심의’ 절차(안 제17조)를 두고 있으며, 종합 심의를 위한 기구인 ‘남해안권 관광진흥 종합심의위원회’(안 제16조)의 구성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다만, 행정안전부는 ① ‘남해안권 관광진흥 종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4조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은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직접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②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종합심의’의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바.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18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8조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18조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지정·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관광개발사업의 준공 시까지로 한다)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0.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21.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2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35.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36.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인·허가 등의 의제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2) 검토의견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여러 법률이 규정한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제정안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 하천점용, 국유재산사용 등을 의제함으로써,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또한, 제정안은 인·허가의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21년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준용¹⁸⁾하도록 하여 인·허가의제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별법상 인·허가 제도는 해당 개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전규제방식으로 공익을 보호하려는 장치로써, 복수의 인·허가를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는 인·허가의제 제도의 도입은 행정청 상호간 사전협의를 조항 등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18)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관 인·허가사항을 제정안에 따라 의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산업부에서 반대 또는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인·허가의제 등 관련 타 부처 의견

조항	부처	검토의견
안 제18조 제1항 (제1호)	국토부	-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의 일반적 기준인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칭하며, 관할 지자체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의제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형해화할 우려 -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은 건축물 건축,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분(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마목은 개별 건축계획)에 한하여 의제 바람직 「국토계획법」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는 삭제된 것으로 개정안도 삭제할 필요
안 제18조 제1항 (제10호)	해수부	- 어항은 어항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어항구역이라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어항 개발자(지정권자)와 관리자(어항관리청)이 구분되어 있고, 수협·어촌계·영어조합·상인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음 - 이에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위해선 상기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리 부분에 다양한 절차*가 있어, 어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도 개별 「어촌·어항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수협 등 공공단체에는 우선 허가 가능. 허가 시 경우에 따라 재산이 지정권자에게 귀속 가능하며, 허가 이후에도 무상사용 수익허가, 점·사용 허가 등 다양한 절차 포함 - 따라서, 어항이라는 특수성과 어항시설의 적정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의제 허가 보다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안 제18조 제1항 (제13호)	농림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농지법상 인·허가 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인·허가 의제 사항이 될 수 없어 조항 삭제 필요

조항	부처	검토의견
안 제18조 제1항 (제27호)	농림부	초지를 전용하려면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해안관광청장의 승인으로 초지를 전용함은 「초지법」과 상충되어 불가
안 제18조 제1항 (제33호)	산업부	-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진흥지구 지정목적*, 실시계획 승인권자** 등이 상이함 * (관광진흥지구) 남해안권의 지리적·자연적·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촉진 ** (승인권자) 관광진흥지구 : 남해안관광청장, 경제자유구역 : 시도지사 - 또한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발전계획,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함 - 제도의 목적과 운영방식이 상이하고, 관광진흥지구 실시계획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발전계획, 개발계획과의 부합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을 의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이주대책, 준공인가,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의 준공인가,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시 지역기업 우대 등 관광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지구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관광진흥지구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이와 공동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준공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광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관광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남해안관광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남해안관광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의 의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관광진흥지구 내 개발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광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안관광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계획에서 정한 개발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지구 내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관광진흥지구의 비율과 그 공급 절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남해안권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 수용·사용, 이주대책 수립, 준공인가,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절차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정이 필요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토지 등 수용·사용’(안 제19조)은 공익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고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또한, ‘이주대책’(안 제20조)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 수용·사용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대상에게 하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개별법에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 수용·사용’ 근거를 규정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도 같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지역경제발전, 국가경쟁력 도모라는 측면에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는 사업을 개별 법률로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수용·사용을 위해서는 동 법의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¹⁹⁾

다음,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24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에 있어

19)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특정 지역 개발법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²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²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우대조치를 강행규정화하고 있는바, 우대조치를 규정한 타 입법례는 이를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괄적·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의 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의 완화 적용 등 개별법상 규제 적용의 특례를 두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25조(「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산림청장은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지구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의 특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자연공원법」 적용의 특례) 환경부장관은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지구의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제2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관광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0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지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국·내외 기업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및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폐교재산의 활용) ① 남해안권에 소재한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국가재정법」 적용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남해안권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10호에 따라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출입국관리법」 적용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지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남해안관광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지구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营业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를 말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허가절차 및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2) 검토의견

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시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내에서의 개별법상 규제 등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각 개별법상 규제조항은 해당 법률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례 조항을 두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산림청 등 다수 부처에서 소관 법률 조항의 적용 배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임업생산과 재해방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지로서, 보전산지에서의 허용 행위는 제한²²⁾되어 있고,

22)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동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²³⁾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전산지에서의 제한적 허용행위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제방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설치가 해당하는 바, 제정안에 따른 관광진흥지구 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제정안이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부여한 점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강원특별법의 사례처럼 동 권한을 관광진흥지구가 속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²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23)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 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2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427호, 2024. 6. 8. 시행예정)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

둘째,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공원으로,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동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 해제하거나 구역 축소가 가능함.

또한,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의 지정, 지정 해제, 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할 시·도지사 등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제정안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79개소 중 29개소(36.7%)가 남해안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환경부는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및 훼손을 방지하려는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 자연공원의 해제·축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광진흥지구 지정으로 동 법에 대한 적용 특례를 두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임.

제2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와 관련한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음.

제정안은 관광진흥지구 건축행위에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입법례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²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²⁶⁾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²⁷⁾ 등이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는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환경 등과 직결되는 주요한 도시관리수단이고, 환경성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등 기초조사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9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게 정해질 사항이므로, 무분별한 완화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넷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따라 상승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취지임.²⁸⁾

그러나,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개발부담금’의 취지와 준조세인 부담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은 타 지역 또는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국토교통부는 동 법 제7조제3항이 남해안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이미 면제하고

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있으며, 동 조 제4항에 따른 지자체 귀속분 경감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²⁹⁾

다섯째,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평가로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보통 9개월~18개월로, 제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였음.³⁰⁾

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은 공공청사·교육시설 등 건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보안 관련 사업 등으로 「국가재정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³¹⁾ 특히 신속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³²⁾ 외에는 개별법에 면제 특례를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개별법보다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남해안권 관광진흥 관련 불특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사사례 법제화 요구 등으로 동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여섯째,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업 신규허가 시 기본 허가요건 외에도,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3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3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허가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바,³³⁾ 이는 카지노업이 사행산업으로서 정부가 부여하는 특권적 성격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제정안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에서 카지노업 허가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법에서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³⁴⁾도 있지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강원랜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스파이어’ 외에는 개별법에 따라 실제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는 점과, 제정안상 남해안권인 부산, 경남, 전남의 경우 이미 다수 지역이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자유

33) 「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 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규정으로도 카지노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자. 관광산업의 지원(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는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관광산업 진흥, 휴양·치유관광산업 진흥, 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 진흥, 섬 관광 활성화, 해양관광축제 활성화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제36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과 어촌·어업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휴양·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에서의 수상레저활동(「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및 생산 지원)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권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의 우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사업이 관광진흥지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1조(남해안권 섬 관광 활성화)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소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2조(남해안 해양관광축제의 활성화)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남해안권 지역축제를 남해안 해양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남해안 해양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남해안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산업, 휴양·치유 관광사업, 수상레저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 규정으로 남해안권 관광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동 지원 사항은 「관광진흥법」, 「해안내륙발전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 추진 가능하여 별도 조항의 신설 필요성은 낮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제정안이 규정한 ‘남해안권’이 포함된 경우도 다수 이므로, 중복 입법, 재원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표] 개정안과 유사하게 시행 중인 제도 및 사업

개정안	시행 제도 및 사업	소관 부처
해양관광산업 진흥 (안 제36조)	「해안내륙발전법」 제28조에 따른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해양레저관광진흥법」(2024.1.30. 제정, 2025.1.31. 시행)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개정안	시행 제도 및 사업	소관 부처
휴양·치유관광 산업의 진흥 (안 제37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 등 - 문체부는 '17년부터 웰니스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관광 관련 일반법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발의	문체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 (안 제38조)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 레저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해양관광 개발사업 추진 등을 규정 - 관광진흥기본계획에 해양레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 지원 중	문체부 해수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의 우선 지원 (안 제40조)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에 따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등 사업 추진 중 - 여수·통영·하동 등 남해안권 3개 지자체는 스마트관광도시로 기 선정·지원 중(총 13개소 중 3개소, 23%에 해당)	문체부
남해안권 섬 관광 활성화 (안 제41조)	- k-관광섬 육성사업 - 사업기간: 2023~2026년 - 사업대상: 5개 섬(전남 신안 흑산도, 여수 거문도, 인천 옹진 백령도, 전북 군산 명도·말도·방축도, 경북 울릉도)	문체부
남해안권 해양관광축제 활성화 (안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에 따라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한 축제에 대해 지원 - 남해안권의 경우 통영한산대첩축제, 목포항구축제, 부산 광안리 어망축제 등이 '20~'23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지원 중	문체부
전문인력 양성 (안 제43조)	「관광진흥법」 제47조의7에서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 분석 및 육성 등 규정 - 맞춤형 관광인재육성, 관광인력양성 기반 조성, 종사원 전문 역량 강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등 관련 사업 추진 중	문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작성

차. 재정지원 등(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4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는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지구 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44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남해안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 제46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관광진흥지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 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안 제44조는 국가 및 지자체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용수, 폐수처리, 전력시설,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입법례³⁵⁾에서 특정 지역 및 특구 등에 기반시설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과 관련, 환경부는 상수도 설치의 경우 지자체 사무이므로 설치 비용 지원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45조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지원 근거와 동 법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도 지원 가능하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 각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을 일정 비율 가감하는 방식으로 적용³⁶⁾하고 있으므로, 특정 지자체의 우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47조는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이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이고, ‘사용료’는 국·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그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과하는 경비로,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 등 입법례를 참고³⁷⁾하여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입법대상에 남해안권을 포함하는 「해안내륙발전법」에 이미 부담금 감면조항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부처에서 소관 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7) 「해안내륙발전법」 제32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 등

[표] 부담금 등 감면 관련 타 부처 의견

조항	부처	검토의견
안 제47조	농림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비율은 농지법령(시행령 제5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기존 감면대상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 시 감면조항 신설은 신중 검토 필요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은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초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현재 규정으로도 폭넓은 감면 가능
안 제47조	환경부	• 타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및 개발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조항 삭제 필요 •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사업시행과 직접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안 제47조	국토부	• 「국토계획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인 건축행위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국토계획법」 제68조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해당 건축행위 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68조제6항 및 제7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에 대한 경우와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에서 기반 시설설치비용의 감면·면제 내용은 불필요 * 제정안과 유사 법률인 「해안내륙발전특별법」에서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카.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추진기구의 설치(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문체부장관 소속)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48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이하 “남해안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남해안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53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7.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남해안관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남해안관광청장
3. 시·도지사
4.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해안관광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어업·환경·해양·도시·문화·관광·휴양·스포츠·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남해안권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남해안관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49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이하 “남해안관광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그 밖에 남해안관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의 설치 등) ①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이하 “남해안관광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남해안관광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남해안관광청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업무)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7. 제53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총괄·조정
9. 제63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및 제64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10.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남해안관광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 검토의견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등 별도의 추진기구 설치하는 제정안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위원회의 남설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복위원회 신설을 금지하고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정안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는 심의안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문체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권역별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관광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토부는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른 해안권·내륙권 발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³⁸⁾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제정안에 따라 관광진흥청을 설치할 경우 동일 권역에 대한 업무 중복이 우려됨.

3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새만금개발청, 행복청 등³⁹⁾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한 사례도 있으나, 동 사례는 특정 지역이 대상이지만 개발사업의 종류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임. 반면, 제정안의 경우 개발사업의 종류(관광)와 소관 중앙행정기관(문체부)이 모두 단일하다는 점에서, 위 사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조직법」 제2조⁴⁰⁾에서 중앙행정기관은 동 법 등에 따라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추진기구 설치 등에 관한 타 부처 의견

조항	부처	검토의견
안 제48조	국조실	국무총리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각 업종·권역 등을 포함한 관광진흥정책 전반을 총괄수립·조정 중으로, 하위 분야에 대해 별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이 불필요하며, 특정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시 각 하위분야별 위원회 남설 우려

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40)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조항	부처	검토의견
	행안부	개별 법률에서 직접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4조 등 정부조직법령 체계와 맞지 않으며, ‘국가관광전략회의’나 ‘문체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기 설치·운영 중인 협의체를 통해 해당 기능 수행 필요
안 제49조 제50조	행안부	- 문체부의 관광진흥 관련 기능을 분리·확대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조직 관계법령상 정책의 범위, 업무량, 관할권의 범위 등 고려 시 중앙행정기관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 대상별 조직인 ‘남해안 관광진흥청’ 설치시 기능별 조직인 문체부와 기능과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지역의 권역별 관광진흥청(서해안, 동해안 등) 설치 요구로 확산될 우려
	해수부	-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별도 조직 신설보다는 문체부-국토부-행안부-해수부 등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해수부는 해수부-부산시-경남도-전남도 간 MOU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전략을 마련 중에 있음.

타. 특별회계 설치(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1) 제정안의 개요

안 제53조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남해안관광청장으로 규정함.

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차입금, 예비비,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3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의 설치) ①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남해안관광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54조에 따른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관광진흥지구 내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3. 제3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비용
4. 남해안관광청의 운영비
5. 제3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5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⑤ 남해안관광청장은 특별회계를 관리·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검토의견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법률로 설치하는 회계로서, 2024년 4월 기준 18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음.

다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특별회계의 남설은 예산을 복잡하게 하여 예산규모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설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경우 기재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은 신설된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회계나 기존 특별회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¹⁾

그러나,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체부의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제정안에 따른 남해안권을 포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⁴²⁾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 회계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41)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42) '24년 기준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은 706억 1,400만원이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77억 7,800만원임.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자체 재원이 부족한 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특별회계 설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조는 특별회계를 법률로써 설치하되, 동 법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⁴³⁾에 따라 제정안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도 설치근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함.

파.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등(안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는 관광진흥지구내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진흥구역의 국내외 투자자 등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43)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정안 원문]

안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58조(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 지정)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관광진흥지구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이하 “투자진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구역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구역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③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투자진흥구역의 지정 해제)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투자진흥구역의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구역의 국내외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투자진흥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지매입비의 용자, 고용 및 고용훈련 보조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기업 또는 개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경제특구로,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감면, 국공유재산 특례,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개별법상 사례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지정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⁴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⁴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⁴⁶⁾ 등이 있음.

4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4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내에 ‘투자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남해안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해안내륙발전법」이 남해안권을 포괄하는 ‘해안권’에 대한 투자진흥지구⁴⁷⁾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기존 제도 활용으로도 국내외 투자 유치라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⁴⁸⁾의 우선 개정 없이 투자진흥지구 내에서의 조세, 지방세 감면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법방식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4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별법상 의무고용 등 규정 배제 (안 제62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62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등 해당 개별법상의 우선고용, 의무고용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 적용,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원문]

안 제62조
제6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투자진흥기구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둬으로써, 해당 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지역, 지원지역 등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상 의무적용 배제 사례

특례 종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경제자유 구역법	자유무역 지역법	기업도시 특별법	새만금 사업법
고령자 고용의무 배제		○	○	○	○
국가유공자등 우선고용 배제	○	○	○	○	○
장애인 고용의무 배제		○	○	○	○
무급휴일 적용 가능		○		○ (보상휴가제)	○
파견대상업무 확대, 파견기간 연장 가능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정안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의무고용 규정 등을 배제함으로써, 남해안권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개방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임.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개별법상 의무고용 규정 등을 배제하는 조항은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개별법상 의무고용 등 배제 적용에 대한 타 부처 의견

조항	부처	검토의견
안 제62조 제1항 (제1,2, 3호)	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제도는 헌법 제32조⑥*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우선적인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남해안권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보훈관계법령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특례조항 삭제 필요 * 헌법 제32조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안 제62조 제1항 (제4호)	고용부	장애인 근무가 불가능한 직무나 상황 등이 없이 남해안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예외를 두는 것은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하는 것은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안 제62조 제2항	고용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고 근로관계 당사자도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바, 다른 법률에서 그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안 제62조 제3항	고용부	근로자 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업무·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대상업무기간 확대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이해관계자 의견이 큰 사안인 점 등 고려 필요

거. 벌칙·과태료(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67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8조는 양벌규정, 안 제69조는 사업시행자가 남해안관광청장의 인가 등 취소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제1항에 따른 남해안관광청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관광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계획·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받거나 개발계획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하고, 남해안관광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여,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반행위 억제효과와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⁴⁹⁾

참고로,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위반이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해안내륙발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도 유사하게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49) 기 발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정점식의원 등 11인, 2023. 6. 7, 의안번호 제2122512호)은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표] 개발사업에서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벌칙 등 입법례

제명	조항
동·서·남해 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제명	조 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덕도산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다만, 제정안은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를 ‘제7장 보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보칙’은 법률의 실체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이므로, ‘제8장 벌칙’ 장을 따로 신설하여 벌칙 조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77